

항공보안자율신고제도

항공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자율신고로 통해 접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항공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.

항공보안: 항공기 납치·폭파, 공항시설 파괴 등 불법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, 절차, 방법 등을 말합니다.

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승객(공항이용자): 여행 중에 항공보안에 관한 불편사항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내용 등을 신고해 주세요.

보안업무 종사자: 업무 수행 중에 항공보안 위해요인 및 항공보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신고해 주세요.

일반업무 종사자: 공항 및 항공기 안팎에서 업무 수행 중에 항공보안 분야에 도움이 될 사항 등을 신고해 주세요.

항공보안 관련 내용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.

항공보안에 대한 위해요인, 제도 개선 및 불편사항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홈페이지, 이메일, 우편, 팩스, 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· 홈페이지 접속방법 :

- ① 홈페이지(avsec.ts2020.kr) → ② 온라인 신고하기 → ③ 신고서 작성 → ④ 접수

· 이메일 : avsec@ts2020.kr

· 우 편 :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

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보안자율신고제도 담당자 귀하

· 팩 스 : 054-459-7149

· 전 화 : 054-459-7384

신고한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?



신고접수 1

접수 및 긴급·일반 사항 확인

정밀분석 2

사실여부 및 위험성 평가

관계기관 통보 3

중요보안위험 및 개선사항 통보

정책 및 제도개선 4

보안대책 수립 등 정책반영

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나요?



「항공보안법」 제3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자와 신고내용이 철저히 보호됩니다.

- 누구든지 자율신고 내용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- 신고자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, 신고내용은 보안사고 예방 및 항공보안 확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

신고제도의 기대효과는?



신고해 주신 내용은 보안 운영체계 전 분야에 대한 위해요인을 개선하고, 보안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 항공보안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.

avsec.ts2020.kr

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한국교통안전공단
항공보안자율신고제도 담당자 귀하
Tel: 054-459-7384 / Fax: 054-459-7149
E-mail: avsec@ts2020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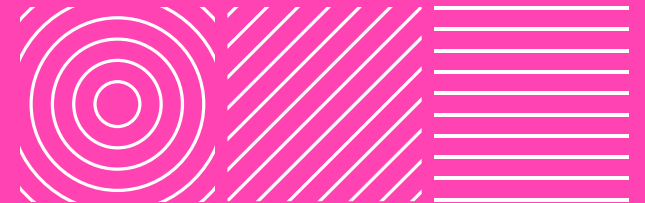


승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

항공기 반입금지물품 및 항공보안자율신고제도 안내



AVIATION SECURITY
VOLUNTARY REPORTING SYSTEM



항공기 반입금지물품

「항공보안법」 제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,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기내반입금지물품은 홈페이지(avsec.ts2020.kr)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기내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검색해 보세요!

칼 ?

동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,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이라도 공항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안전 또는 승객·승무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.

1

(모방) 총기, 가스총, 활, 표창, 다트, 새총 등

상해를 입힐 수 있는 발사 기능의 장치

객실 **No** 위탁수하물 **Yes**

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 가능

2

도끼, 칼, 송곳, 가위, 맥칼 등

상해를 입힐 수 있는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

객실 **No** 위탁수하물 **Yes**

가위는 날의 길이가 6cm 이하인 경우에는 객실 가능

3

전자충격기, 호신용 스프레이

기절 또는 마비시키기 위해 고안된 장치

객실 **No** 위탁수하물 **Yes**

전자충격기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유·무 확인 후 전원을 끈 상태로 위탁 반입, 보조배터리(파워뱅크) 기능의 제품은 반입 불가

호신용 스프레이류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에는 1인당 1개(100ml 이하)까지만 가능

4

드릴(드릴부품), 스크루드라이버, 망치, 톱, 렌치 등

상해를 입힐 수 있는 공구

객실 **No** 위탁수하물 **Yes**

렌치, 스패너, 펜치류는 총길이가 10cm 이하, 끌, 정, 스크루드라이버류는 날의 길이가 6cm 이하인 경우에는 객실 가능

5

야구방망이, 아령, 볼링공, 빙상용 스케이트, 무술 장비 등

상해를 입힐 수 있는 둔기 또는 스포츠용품

객실 **No** 위탁수하물 **Yes**

6

실탄, 폭죽, 조명탄, 라이터, 인화성 액체, 농약 등

폭발성·인화성 물질 또는 전염성·생물학적 위험물질

객실 **No** 위탁수하물 **No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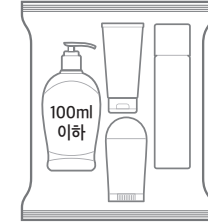
실탄류는 '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'에 따라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수하물 가능

소형 라이터는 1인당 1개 객실 가능, 위탁수하물 불가

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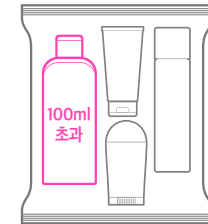
액체, 젤, 분무류 (국제선 해당)

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



전체 : 1L 이하
개별용기 : 100ml 이하

객실 **Yes**



전체 : 1L 이하
개별용기 : 100ml 초과

객실 **No**



전체 : 1L 초과
개별용기 : 100ml 이하

객실 **No**

물·음료·식품·화장품 등 액체·분무(스프레이) 젤류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,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 1개 한해 반입 가능

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, 단, 유아식은 유아동반 승객에 한해,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